

**제11장**  
**제도적 장치**

**제11.1조**  
**공동위원회**

1.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. 공동위원회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필리핀의 통상산업부의 장관급 공무원 또는 그들 각자의 지명자들이 공동 의장이 된다.

2. 공동위원회는

가.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.

나.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율한다.

다.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한다.

라.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.

마. 제9장(분쟁해결)에 따른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,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는 분쟁의 해결을 모색한다. 그리고

바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대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.

3. 공동위원회는

- 가. 자신의 임무 완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그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.
- 나. 양 당사국 각각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, 부속서 및 부록을 포함한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채택할 수 있다.
- 다.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할 수 있다.
- 라. 자신의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. 그리고
- 마. 양 당사국에 권고할 수 있다.

4.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비밀로 여기는 정보를 공동위원회,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에 제출하는 때에는,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.

### 제11.2조 공동위원회의 절차

- 1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부터 1년 안에 회합하고, 그 후에는
  - 가.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,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. 그리고
  - 나.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,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요청 접수로부터 30일 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.
- 2. 공동위원회의 회합은 대면으로,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이용 가능한 모

든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.

3.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과 권고는 상호 합의로 이루어진다.

### 제11.3조 위원회 및 작업반

1. 다음의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가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수 있다.

가. 상품무역위원회

나.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

다. 역외가공지역 위원회

라. 무역구제위원회, 그리고

마.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

2.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의 구성, 회합 빈도 및 기능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르거나, 이 협정과 합치하게 공동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와 같다.

3.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는 자신의 회합에 앞서 충분히 자신의 일정 및 의제를 공동위원회에 알린다. 그들은 공동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.

4.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에 할당된 임무를 변경 또는 수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거나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해산할 수 있다.

## 제11.4조

### 접촉선

1.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무역 관련 사안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 접촉선을 수립한다.

가. 한국의 경우,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
나. 필리핀의 경우, 통상산업부 또는 그 승계기관

2.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,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을 적시하고 요청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. 각 당사국은 자국 접촉선의 모든 변동 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.